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0. 24.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 10.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4. 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제62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고시’에 위임하던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제62조제5항).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중소기업부장관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의 취소, 개인투자조합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이 고시에 위임되

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고시는 부령 등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없이 부처 단독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가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어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중소기업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¹⁾은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

“세부기준” 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고시²⁾에서 위반행위 별 행정처분기준 등 “세부기준”과 시정명령 처분 및 유예기간,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절차”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56호)

제12조(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투자비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회사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기준”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도 고시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제62조제5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과 절차는”으로 한다.

안 제36조제3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과 절차는”으로 한다.

안 제49조제3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과 절차는”으로 한다.

안 제62조제5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과 절차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 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중소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세부기준은 그 위 반행위의 유형과 위 반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중소기업 업무령으로 정한다.</u>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u>세부기준과 절차는</u> ----- ----- ----- -----.
제36조(창업기획자 등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세부기준은</u> <u>그 위반행위의 유 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 소벤처기업부령으</u>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u>세부기준과</u> <u>절차는</u> ----- ----- -----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로 정한다.</u>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세부기준은</u> <u>그 위반행위의 유 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 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한다.</u>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u>세부기준과 절차는</u>----- ----- -----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 는 조치 요구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세부기준은 그 위 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한 다.</u>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u>세부기준과 절차는</u> -----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2조제5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요구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u>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	---